

한-베트남 FTA 주요 내용 및 의의



주호치민총영사관



산업통상자원부

FTA 개념 및 의의

경제통합의 기본단계로

협정체결 국가 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
제 3국에 대해 각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유지



FTA 개념 및 의의

WTO

- **비차별 원칙** : 최혜국대우 (MFN : Most-Favored-Nation)

FTA

- **MFN 원칙의 예외** : GATT 제 24조 / GATS 제 5조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

“합리적인 기간 이내(within reasonable length of time)”

FTA

2개국 또는 2개 이상 국가간의 자유무역 지대

- **상품무역**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 철폐
- **서비스 · 투자** : 자유화 및 양허
- **지재권 · 경쟁 · 정부조달 등** : WTO 플러스 규범 적용



FTA 개념 및 의의

FTA의 효과

무역창출효과 (Trade creation effect)

고가 국내산



저가 역내산

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 effect)

역외산



역내산

현대적 의미의 동맹 (modern alli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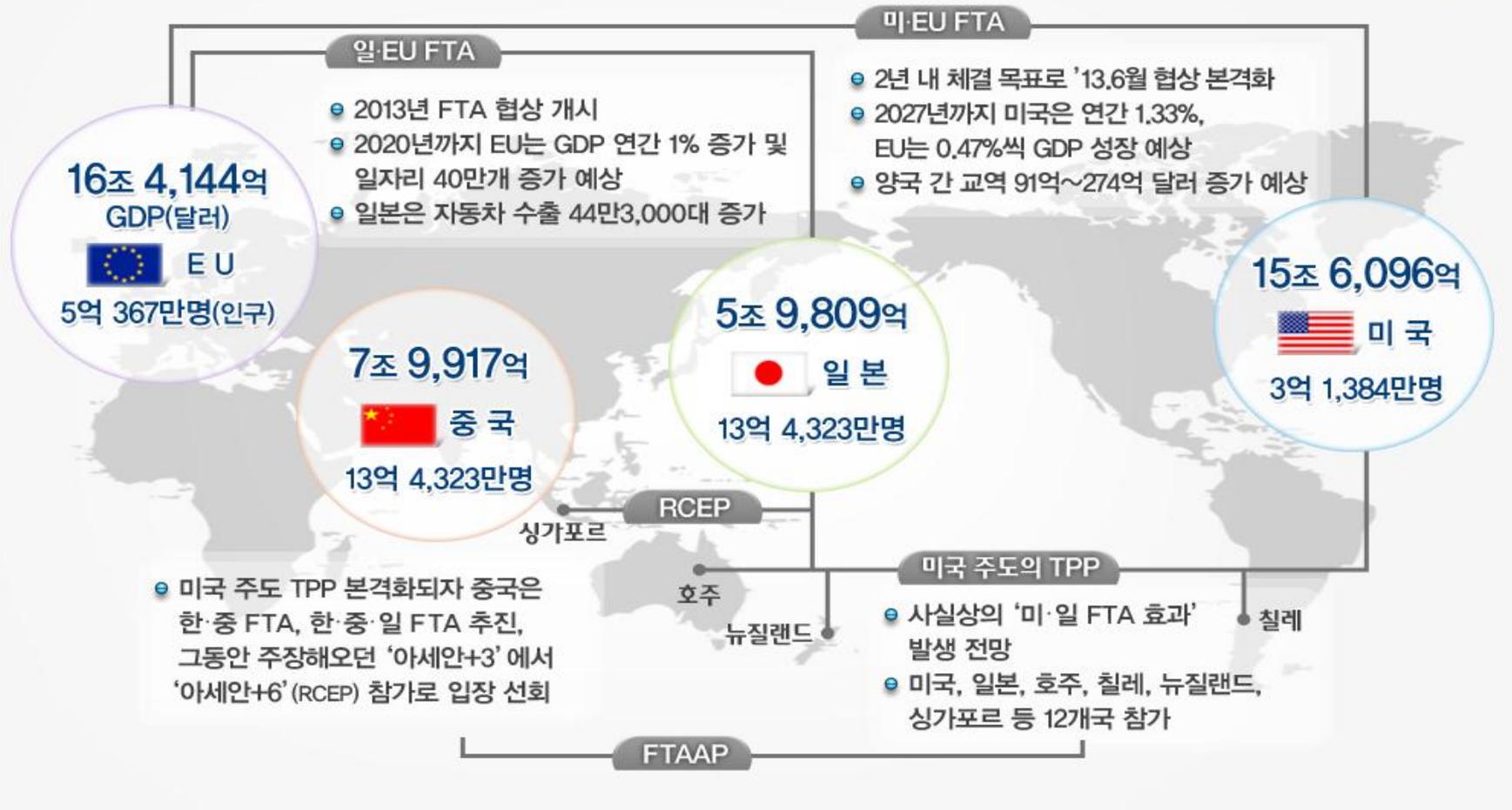
- Like-minded 국가간 통합 심화
- 국제 정치·경제적 의미

맞춤형 자유화

- 취약부분에 대한 배려 가능
- 미래 다자간 무역 협상 토대

FTA 개념 및 의의

거대경제권간 FTA 체결 및 지역경제통합 움직임 활발



한-베트남 FTA 이해



한-베트남 FTA 추진 경과

2007년 베트남 WTO 가입

2007년 한-ASEAN FTA 발효

2012.8월 FTA 협상 개시

2012.9월 1차 협상

2014.12월 타결 선언(9차협상)

2015.5월 공식서명

국내 비준 절차 이후
2015년내 발효 목표



한-베트남 FTA 협정문 구성

서문 및 총 17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

상품관련

- ① 상품 ② 원산지(PSR포함) ③ 통관 및 무역 원활화
④ 무역규제 ⑤ SPS [위생·검역] ⑥ TBT[기술장벽]

서비스·투자

- ⑦ 서비스[금융·통신,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포함]
⑧ 투자

규범·협력

- ⑨ 지재권 ⑩ 경쟁 ⑪ 투명성 ⑫ 전자상거래*
⑬ 경제협력

총칙

- ⑭ 최초규정 및 정의 ⑮ 예외
⑯ 분쟁해결 ⑰ 제도 및 최종 조항

* 베트남 최초로 양자 FTA에서 별도 챕터로 채택

한-ASEAN FTA는 총칙, 자유화, 경제협력, 그 밖의 분야, 최종조항 등 5개 챕터로 구성

분야별 주요 내용 – 서문

협정문의 기본정신 및 원칙

- ▶ 양국의 긴밀한 관계, 경제협력 기반 강화
- ▶ 무역, 투자 장벽 제거
- ▶ 사업환경 개선
- ▶ WTO 및 한-아세안 FTA상의 권리, 의무 존중

목적

- ▶ 상품교역을 실질적으로 자유화
- ▶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실질적으로 자유화
- ▶ 양국의 경제에서의 경쟁, 특히 양국 간 경제관계 관련 경쟁 증진
- ▶ 양 당사국이 합의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위한 틀 수립

분야별 주요 내용 – 상품 협정문

내국민 대우(제2.2조)

- ▶ 1994 GATT 제3조 따라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 부여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현행 유지(제2.3조 및 2.4조)

- ▶ 부속서 규정 일정에 따라 각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 인하 또는 철폐
- ▶ 관세 인상 및 신규 관세 도입을 금지(Standstill)

무역 관련 비관세 조치(제2.11조)

-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조치의 투명성을 보장
- ▶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는 어떠한 조치도 준비, 채택, 적용하지 않도록 보장

상품무역위원회(제2.14조)

- ▶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를 포함한 사안 협의
- ▶ 비관세 조치 등 상품무역 장벽에 대한 검토

분야별 주요 내용 – 상품 양허

한-ASEAN FTA, 2012년 무역액 기준으로 협상

- (한국, 12,232개) 한-ASEAN FTA 개방(11,169개) + 499개 품목 추가 개방
품목수 기준 95.4%, 수입액 기준 94.7% 개방
- (베트남, 9,471개) 한-ASEAN FTA 개방(8,245개) + 272개 품목 추가 개방
품목수 기준 89.9%, 수입액 기준 92.4% 개방

관세 철폐는 대부분 10년내에 선형 철폐

- (한국, 499개) 대부분 3-5년 이내에 철폐, 농산물 10년,15년 철폐
- (베트남, 272개) 자동차부품 3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10년내 철폐

상호주의(Reciprocal Agreement) 폐지

- 수출국 민감품목에 대해, 수입국이 양허했더라도 FTA 따른 양허관세 혜택
- 한-ASEAN FTA에서 566개 품목이 상호주의 적용 : 실질적 자유화
* 공산품 61, 농산물 348, 수산물 146, 임산물 11

분야별 주요 내용 – 상품 양허 전체

구분	한국				베트남			
	품목수(개)		2012 對베 수입액(천불)		품목수(개)		2012 對한 수입액(천불)	
전체	12,232		5,717,642		9,471		15,494,076	
한-아세안 FTA	11,169	91.3%	5,244,642	91.7%	8,245	87.1%	13,375,246	86.3%
즉시 철폐 (유무관세 포함)	91	0.7%	72,330	1.3%	65	0.7%	179,932	1.2%
3년 철폐	216	1.8%	12,931	0.2%	16	0.2%	296,688	1.9%
5년 철폐	134	1.1%	43,140	0.8%	47	0.5%	19,070	0.1%
7년 철폐	7	0.1%	2,998	0.1%	29	0.3%	16,747	0.1%
8년 철폐	-	-	-	-	6	0.1%	8,137	0.1%
10년 철폐	48	0.4%	40,195	0.7%	106	1.1%	405,553	2.6%
15년 철폐	3	0.02%	242	0.004%	3	0.03%	11,173	0.1%
소계	499	4.1%	171,836	3.0%	272	2.9%	937,301	6.1%
총합계	11,668	95.4%	5,416,478	94.7%	8,517	89.9%	14,312,547	92.4%

분야별 주요내용 - 상품양허 - 공산품

양허 단계	우리 양허				베트남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한-아세안 FTA	9,644	96.5%	4,728,181	97.2%	6,678	85.6%	13,209,686	86.2%
즉시 철폐	87	0.9%	72,330	1.5%	64	0.8%	179,932	1.2%
3년 철폐	155	1.6%	8,713	0.2%	16	0.2%	296,688	1.9%
5년 철폐	45	0.5%	14,086	0.3%	46	0.6%	19,070	0.1%
(5년내)	287	2.9%	95,128	2.0%	126	1.6%	495,691	3.2%
7년 철폐	7	0.1%	2,998	0.1%	29	0.4%	16,747	0.1%
10년 철폐	6	0.1%	7,328	0.2%	106	1.4%	405,553	2.6%
(10년내)	300	3.0%	105,454	2.2%	261	3.3%	917,991	6.0%
15년 철폐					3	0.04%	11,173	0.1%
소계	300	3.0%	105,454	2.2%	264	3.4%	929,164	6.1%
양허제외	48	0.5%	29,457	0.6%	857	11.0%	1,177,715	7.7%
소계	348	3.5%	134,912	2.8%	1,121	14.4%	2,106,879	13.8%
합계	9,992	100%	4,863,093	100%	7,799	100%	15,316,565	100%

분야별 주요내용 - 상품양허 - 농산물

양허 단계	우리 양허				베트남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한-아세안 FTA	1,086	67.4%	236,800	67.8%	1,179	91.8%	109,549	90.2%
즉시 철폐	-	-	-	-	1	0.1%	-	-
3년 철폐	35	2.2%	4,218	1.2%	-	-	-	-
5년 철폐	54	3.4%	18,866	5.4%	1	0.1%	-	-
(5년내)	89	5.5%	23,085	6.6%	2	0.2%	-	-
8년 철폐	-	-	-	-	6	0.5%	8,137	6.7%
10년 철폐	30	1.9%	9,763	2.8%	-	-	-	-
(10년내)	119	7.4%	32,848	9.4%	8	0.6%	8,137	6.7%
15년 철폐	3	0.1%	242	0.1%	-	-	-	-
(15년내)	122	7.6%	33,090	9.5%	8	0.6%	8,137	6.7%
양허제외	403	25.0%	79,295	22.7%	97	7.6%	3,814	3.1%
소계	525	32.6%	112,385	32.2%	105	8.2%	11,951	9.8%
합계	1,611	100%	349,185	100%	1,284	100%	121,500	100%

분야별 주요내용 - 상품양허 - 수산물

양허 단계	우리 양허				베트남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한-아세안 FTA	439	69.8%	279,660	55.3%	388	100%	56,011	100%
즉시 철폐	4	0.6%	-	-	전체 수산물 2018.1.1 무관세(관세철폐 완료)			
3년 철폐	26	4.1%	-	-				
5년 철폐	35	5.6%	10,188	2.0%				
(5년내)	65	10.3%	10,188	2.0%				
10년 철폐	12	1.9%	23,104	4.6%				
(10년내)	77	12.2%	33,292	6.6%				
TRQ	7	1.1%	142,487	28.2%				
양허제외	106	16.9%	49,925	9.9%				
소계	190	30.2%	225,704	44.7%				
합계	629	100%	505,364	100%				

분야별 주요내용 - 상품양허 이해

www.fta.go.kr

홈페이지검색

FTA 강국, **KOREA**

홈 | 사이트맵 | 글자크기

우리나라 FTA | FTA 활용-대책 | 통상정책마당 | FTA 정보광장 | 참여마당 | 기관소개

우리나라 FTA

> 우리나라의 FTA

FTA 일반

FTA의 개념
FTA 주요내용
전세계 FTA 체결현황

우리나라의 FTA

FTA 정책요약
현황
발효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 한-ASEAN FTA
- 한-인도 CEPA
- 한-EU FTA
- 한-페루 FTA
- 한-미 FTA
- 한-터키 FTA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타결

- 한-콜롬비아 FTA
- 한-중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베트남 FTA

협상중

- 한-중-일 FTA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협상재개 여건조성

- 한-인도네시아 CEPA
- 한-인도 FTA

한-베트남 FTA

HOME > 우리나라 FTA > 우리나라의 FTA > 타결 > 한-베트남 FTA

일지 | 협정문 및 기본문서 | 국가정보 | 언론동향 | 참고자료

pdf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FTA관련 협정문 전문을 PDF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 협정문 상세보기

제목	KOREAN	ENGLISH
서문		
제 1 장		
일반 규정		
제 2 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B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B		
제 3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QUICK LINK

FTA콜센터 1380

FTA추진현황

전세계FTA체결현황

관세율 정보

FTA협정문

국가별 FTA

- > 한·미 FTA
- > 한·EU FTA
- > 한·중 FTA
- > 한·중·일 FTA

RCEP

FTA 용어사전

FTA 지역별 활용센터

FTA활용유관기관

FTA사이버연수원

통상교섭실

통상국내대책관

분야별 주요내용 – 상품양허 이해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1절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020711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0	Y-8
020712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40	Y-8
02071300	- - 절단육과 설육(脬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0	Y-8
02071410	- - - 날개	20	Y-8
02071420	- - - 넓적다리	20	Y-8
02071499	- - - - 기타	20	Y-8
0407210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30	E
04072910	- - - 오리의 것	30	E
04072990	- - - 기타	30	E
0407901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30	E
04079020	- - 오리의 것	30	E
04079090	- - 기타	30	E

분야별 주요 내용 – 원산지 규정 및 절차

원산지 기준 :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기준

- ▶ 완전생산 상품 :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되거나 획득된 상품(신선 농산물)
- ▶ 불완전생산 상품 :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 세번 변경기준 : HS 2단위 변경, 4단위 변경, 6단위 변경(원유 -> 석유)
 - 부가가치 기준 : RVC 40%, 자동차 RVC 45%

원산지 절차 : 증명방식, 특혜관세 신청절차, 검증방식 등

- ▶ 증명방식 : 기관 증명 방식 채택, 자율증명방식 도입 논의 가능
- ▶ 신청절차 :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 원칙,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사후환급 신청 가능
- ▶ 검증방식 : 간접검증 방식, 필요시 수출국 방문검증 가능

분야별 주요내용 – 품목별 원산지 기준

- ▶한-아세안 FTA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
- ▶양국 생산 과정과 교역 패턴을 고려, 무역촉진적 방향으로 품목별 기준 개선

종류	한-ASEAN	한-베 FTA 개선
석유화학	4단위 변경 + RVC 40%	휘발유 제품 6단위 변경
철강	4단위 변경 + RVC 40%	일부품목 6단위 변경
자동차	RVC 45%	자동차부품 일부 세번변경 추가
기계, 전기, 전자	4단위 변경 + RVC 40%	세탁기, 냉장고 등 6단위 변경
섬유, 의류	세번변경 + RVC 기준	섬유제품 역외산 재료 사용 허용
농축산물	완전생산기준	가공농수산물 일부 품목은 세번 변경 및 RVC 추가

분야별 주요내용 – 품목별 원산지 이해

부속서 3-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5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3705.10	-오프셋 복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6.10	-폭이 3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7		사진용 화학주제품[바니시(vernish) • 글루(alue) • 정착제와 이와	

분야별 주요 내용 – 통관 및 무역 원활화

통관절차 간소화

- ▶ 수입물품 도착 전 전자적으로 통관 정보 제출 및 처리 절차 마련 의무

재심 및 불복 청구절차 보장

- ▶ 관세 관련 결정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 공무원 또는 기관과 독립된 행정적 재심과 사법적 재심 절차를 보장

사전 심사

- ▶ 당사국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관련 사전심사 요청 가능

분야별 주요 내용 – SPS, TBT

SPS : WTO 협정 원칙 수용 + 기술협력 강화

- WTO SPS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
- SPS 분야에서 기술협력 기회 모색 + SPS 위원회 설치

TBT : WTO TBT 협정 원칙 수용 + 투명성 강화 + 협력 확대

- WTO TBT 협정에 따라 국제표준, 지침, 권고 등에 기반한 평가 절차 활용
- 기술규정 및 평가절차 제개정시 60일간 의견 제시 기간 허용
- 건축자재,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특정분야 표준 및 기술규정 협력
- TBT 위원회 설치

분야별 주요 내용 - 무역구제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인하 정지 또는 관세 인상이 가능

무역구제조치 발동 투명성 제고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규정, 조사개시 이전 상대국 서면통보, 충분한 협의 기회 제공 등

분야별 주요 내용 – 서비스 무역(1)

12대 서비스 업종(WTO 서비스 업종 분류표)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오락, 여행, 운송, 기타

서비스 교역 거래 방식(WTO GATS)

공급자 주재여부	공급형태	정의	대상	예
서비스공급자가 수요국내에 비주재	Mode1: 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만 국경간 이동	서비스 (한류)	- 전자화 서비스 (통신, 원격서비스 이동)
	Mode2: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서비스 수요자가 공급국에서 서비스 이용	소비자 (관광)	- 비전자화 서비스 (관광객 이동)
서비스공급자가 수요국내에 주재	Mode3: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서비스 수요국 내에 공급자가 주재해 서비스 공급	자본 (해외투자)	- 현지 서비스법인 설립 (투자자본 이동)
	Mode4: 자연인 이동 (Presence of Natural Person)	서비스 수요국 내에 공급인력 주재	노동력 (해외취업)	- 서비스인력의 해외진출 (전문인력 이동)

한-베트남 FTA는 협정문과 3개분야 부속서, 시장개방 양허 부속서로 구성

분야별 주요 내용 – 서비스 무역(2)

서비스 협정문 : 기본원칙 + 투명성 강화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 금지 등 기본 원칙
- WTO, 한-ASEAN 협정을 토대로 투명성/혜택의 부인 조항 규범 제고

시장 개방 : Negative 자유화 방식 재협상 약속

- Positive 자유화 방식에 따라 협정문 및 양허 작성
- 발효 이후 베트남이 Negative 자유화 방식 채택할 경우, 재협상 개시

시장 개방 수준 : 한-ASEAN 플러스

- 도시계획/조경 : 법인 요건 삭제, 전문자격 증명서 요건 삭제
- 기계/장비 임대 : 외국인 지분 51% 제한 합작회사 형태 설립 가능
- 건설서비스 : 법인 요건 삭제

분야별 주요 내용 - 투자

한-ASEAN 투자협정(09년), 한-베 양자투자보장협정(93년)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 및 투자 자유화 규정

투자 보호 규범

-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에 대한 보상, 송금 보장, 투자관련 이행요건 부과 금지,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적 제한 금지, 혜택의 부인 등을 규정
-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체계화하여 투자자 권리 보호 강화

투자 자유화 확대 : 유보 목록 협상 개시

- ▶ FTA 발효 후 비합치조치 유보 목록 협의를 개시하여 1년내 타결
- ▶ 협상 시점에서 베트남이 유보 목록을 작성한 협정 중 최고 수준을 반영

분야별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경쟁

전자상거래 : 전자적 전송에 관한 무관세

- 전자적으로 전송된 내용에 대한 무관세 원칙 영구화
- 전자인증 수단의 자율적 선택 보장
- 온라인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종이없는 무역행정 노력

경쟁

- 경쟁법 집행 일반원칙 : 투명성, 절차적 공정성, 비차별성, 시의적절성
- 국가 독점 분야 기업(국영기업 포함)이 반경쟁적 행위 하지 않도록 보장
- 경쟁당국간 통보, 조정, 협의, 정보교환 등 높은 수준의 협력

분야별 주요 내용 - 지식재산권

WTO 지재권 협정(TRIPS) 플러스 조항 규정을 통해 지재권 보호 수준 및 지재권 위반에 대한 집행 절차를 강화

지재권 보호 수준 강화

- ▶ 입체상표 등록, 유명상표 보호, 부정경쟁 행위 금지, 특허대상 제외 범위 축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 복제권
- ▶ 상표 출원 절차 개선, 특허 우선심사 제도 등 도입

지재권 위반 집행절차 강화

- ▶ 방송보상 청구권, 저작권 추정원칙, 법정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
- ▶ 법정손해배상제도, 사법당국의 권한 강화(압류, 잠정조치 등), 침해물품의 원칙적 폐기 등

분야별 주요 내용 – 기타

경제협력

- 협력 분야 : 산업, 농림수산업, 규정 및 절차, 기타
- 협력 형태 : 정보 및 전문가 교환, 공동 R&D, 발전전략 수립 등
- 이행 : 이행 위원회 설립을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성 도모

투명성

- 국내법/규정/절차/행정판정 등을 신속 공표, 상대국에 대한 정보 제공,
- 행정처분 이전 의견 개진 기회 제공, 재심 및 불복 청구 절차 보장 등

분쟁해결

- 분쟁해결 모든 단계에 구체 시한 규정, 판정 이행을 위한 보복 절차 규정

제도 및 최종 규정

- (한국)산업통상자원부-(베트남)산업무역부간 공동위원회 설치 및 절차

한-베트남 FTA 의의

상생형 FTA

- (한국) 주요 소재부품 관세 철폐로 중간재 수출 증가(편직물 등)
- (베트남) 해외 투자유치 확대 및 대세계 수출증가

親중소기업 FTA

- 중소기업 품목 다수 개방, 원산지 절차 및 증명서 발급 요건 완화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 확대

-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생활가전 등 소비재 품목 다수 개방

우리 기업의 경쟁환경 개선

- 일본-베트남 EPA(09년) 대비 베트남 추가 시장 개방(90.1% Vs. 92.2%)

한-베 FTA 활용 촉진 지원(1)

정부의 FTA 활용촉진 지원정책

FTA 전담지원기관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FTA 이해

- FTA 콜센터 1380
- China Desk

FTA 교육

- FTA 전문인력 양성
- FTA 활용 재직자 교육
- 공급망 교육
- CEO FTA 활용 인식제고 및 성공사례 전파

FTA 활용지원제도

- FTA 컨설팅, 찾아가는 서비스 및 미활용기업 안내 서비스
- 원산지관리 아웃소싱 지원
- 원산지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농수산물식품 특화시스템 보급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 사후검증 대비 지원 강화

대학FTA강좌 지원대학 · 정부간 업무협약 체결



한-베 FTA 활용 촉진 지원(2)

전국 어디서나 1380을 누르면
FTA 활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원스탑으로 해결
(’13.6.24 개통)

-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 사후검증 대응,
FTA 활용방안 등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가 상담



인터넷 기반 상담콜센터
'FTA 1380'(www.fta1380.or.kr)을
구축(’13.10월)하여, 종합서비스 제공